

제142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8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27면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4면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7면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검토보고서	42면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47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74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7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근무시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단축되는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복무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 공무원복무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의2)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109(2004. 5. 19)호 및 서울시 인사과-8518(2004. 5. 2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중 “공직자 행동규율”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고, “기타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를 “그 외에 당직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근무 장소를 무단”을 “무단히 근무 장소들”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하고, “감독권은”을 “감독권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18조제2항중 “직위해제 기간을”을 “직위해제 기간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9조”를 “제27조”로 하고,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을 삭제한다.

제21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여자공무원은”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1시간”을 “1시간의”로 한다.

제24조제6항제3호중 “자랑스러운”을 “자랑스런”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있는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하고, 제27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삽입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를 제29조로 한다.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중 “(국외여행)”을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공무외”를 “공무외의”로 하여 동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중 “조직확장”을 “조직의 확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자치단체”를 “정치단체”로 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권유”를 “착용권유”로 한다.

별표 2중 “공직자 행동율”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하고, 대내관계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 내 관 계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별표 3중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로 하고,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 우 자	3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완수) (생략)	제3조(책임완수)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생략)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현행과 같음) ②----- 공직자의 행동률-----.

현행	개정안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u>이외에</u>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u>기타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u> 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u>외에</u> ----- ----- ----- <u>그 외에 당직자</u> -----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u>근무장소를 무단</u>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u>무단히 근무장소를</u> -----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9조(파견근무) ①~②(생략)	제9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u>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판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u>감독권</u> 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 ----- ----- ----- <u>감독권</u> -----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토요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td></tr> <tr><td>6년이상</td><td>23</td></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td><td>3</td></tr> <tr><td>-----</td><td>6</td></tr> <tr><td>-----</td><td>9</td></tr> <tr><td>-----</td><td>12</td></tr> <tr><td>-----</td><td>14</td></tr> <tr><td>-----</td><td>17</td></tr> <tr><td>-----</td><td>20</td></tr> <tr><td>-----</td><td>21</td></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u>직위해제 기간</u>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u>당해연도</u>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② ----- ----- ----- ----- ----- ----- <u>직위해제 기간</u> ----- ----- ③<u>당해연도</u> ----- ----- ----- -----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정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정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u>경우에</u> ----- -----
②임신중의 <u>여자공무원</u> 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u>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u> ----- -----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u>1시간</u>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④----- ----- <u>1시간의</u> ----- -----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⑥(생략)	⑥(현행과 같음)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청백봉사상 또는 <u>자랑스러운</u> 표창을 받은 때	3. ----- <u>자랑스런</u> ----- -----
⑦소속기관의 <u>장</u> 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u>구청장</u> 은 ----- ----- -----
<u>제4장 열리업무 및 점직</u>	<u>〈삭제〉</u>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u>공무의</u>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의의 국외여행) ----- ----- <u>공무의의</u> ----- -----
<u>〈신설〉</u>	<u>제4장 열리업무 및 점직</u>
제27조(생략)	제28조(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점직허가) ①지방공무원의 열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열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점직하고자 할 때에는 <u>구청장의 사전허가</u> 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점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열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열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점직하고자 할 때에는 <u>구청장의 사전허가</u> 를 받아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0조(정치적 행위) ①(생략)	제30조(정치적 행위) ①(현행과 같음)
1. 정당의 조직, <u>조직확장</u>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1. ----- <u>조직의 확장</u> ----- -----
2.~3.(생략)	2.~3.(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특정정당 또는 <u>자치단체</u> 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3. ----- <u>정치단체</u> ----- ----- ----- ----- -----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4. ----- ----- ----- <u>착용권유</u> ----- ----- ----- -----